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99호서식 중 “검찰”을 “관할 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0호서식 중 “검찰”을 “관할 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1호서식 중 “검찰”을 “관할 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